

# 2021년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안내

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결정을 돕고 실무능력 개발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기업에서는 창의적인 대학생 인력을 업무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대학은 현장실습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

## ■ 대학생 현장실습이란

대학과 실습기관(산업체 및 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

## ■ 현장실습 프로그램 사업 장점

-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인재를 조기 확보
- 현장실습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서 초기 재교육 비용 절감
-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
- 향후 산학협력 확대의 기회

## ■ 현장실습(기업실무연수) 프로그램 개요

실습기간	학기제(15주), 계절제(4~8주)
실습인원	기업 당 최대 10명(평균 1~3명 참여) * 상시 근로자 수의 20% 이내(20명 사업장: 최대 4명)
선발대상	3~4학년 재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
실습생 선발	담당 지도교수와 협의(선발 인원, 희망 전공, 면접진행 등)
근무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</li> <li>• 실습학생에 대하여 4주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</li> <li>•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 및 참여기업 내부규정에 따름</li> </ul>
기업지원금	회사내규에 따름(2021년도 여름 계절학기 기준) *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
학교지원금(장학금)	1개월(4주) 당 40~50만원을 학생장학금으로 지급

## ■ 참여기업 유의사항
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.(실습지원비가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)
-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습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허용합니다.
- 해당기업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,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.(지도교수 매칭하여 최대한 지원)

## ■ 참여방법

신규 참여기업	기존 참여기업
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정보(명함) 현장실습 담당자 메일로 송부 ↓ 기업정보 확인 후 지도교수 매칭 ↓ 기업등록 및 협약체결 * 온라인시스템 ↓ 실습(운영)계획서 작성 * 온라인시스템 ↓ 학생 지원 및 선발 ↓ 실습진행	담당 지도교수와 참여여부 협의 ↓ 실습(운영)계획서 작성 * 온라인시스템 ↓ 학생 지원 및 선발 ↓ 실습진행

## ■ 하계(여름 계절학기) 기업실무연수 일정 안내

구분	일정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등록 및 협약체결</li> <li>실습(운영)계획서 작성</li> </ul>	21.04.26(월) ~ 21.05.14(금)	온라인 시스템
학생 지원 및 선발	21.05.17(월) ~ 21.05.27(금)	면접진행
합격자 발표	21.05.31(월)	
실습진행	<b>21.06.22(화) ~ 21.08.20(금)</b>	기간 중 4~8주

### ※ 기타 문의사항

-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담당  
전강수 ☎ 043-840-3937 / [jk1992@kku.ac.kr](mailto:jk1992@kku.ac.kr)
- 연은정 ☎ 043-840-3934 / [banggae0107@kku.ac.kr](mailto:banggae0107@kku.ac.kr)
-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([kuin.kku.ac.kr](http://kuin.kku.ac.kr))

## 현장실습 협약서 양식

**제1조(목적)** 이 현장실습 협약서는 \_\_\_\_\_ 회사 대표.기관장 (이하 “실습기관”이라 한다)과 현장실습생 \_\_\_\_\_ 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 ; 첨부 참여학생 명단 참조)과(와)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취창업처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상호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)** 현장실습은 기간에 따라 학기제(정규학기 중 실시) 및 계절제(방학기간 중 실시)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- ① 현장실습 기간은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부터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까지( 주)로 하며, 장소는 “실습기관”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.
-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- ③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(1일 8시간)로 간주한다.

**제3조(현장실습 시간)**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“학생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“학생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.
- ③ 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,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“학생”이 만기출석 시에는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현장실습 운영)** 현장실습은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협약 당사자는 다음 제5조와 6조, 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.

**제5조(실습기관의 의무)** ① “학생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
- ②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“학생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.
- ③ “대학”의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.

**제6조(대학의 의무)** ① 현장실습의 운영과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“실습기관”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“실습기관”과 “학생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② “학생”이 제7조(학생의 의무)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.

**제7조(학생의 의무)** “학생”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도록 한다.
- ② 실습기간 중 “실습기관”의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.
- ③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한다.
- ④ 실습 도중 알게 된 “실습기관”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- ⑤ “대학”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 준수 및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**제8조(학생의 권리 및 보호)** ① “학생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
- 가.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
  - 나.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
  - 다.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
  - 라. 현장실습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
- ②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은 “학생”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가. (“학생”이 여성인 경우) 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.
  - 나. 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을 [근로기준법]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.
  - 다. “실습기관”은 [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 고시)]에 따라 “학생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- 라. “대학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“학생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안전·보건상의 조치와 재해보상)** ① 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·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·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“학생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에 따라 재해 보상을 한다. 다만, “실습기관”의 사업이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.

**제10조(현장실습지원비 및 장학금 지원)** ① 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의 협의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“학생”에게 지급한다.

② “대학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“학생”에게 현장실습 장학금을 지급한다.

**제11조(현장실습의 평가)** “실습기관”은 “대학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학생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“대학”에 통보하고 “대학”은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한다.

**제12조(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등)** ① 현장실습 운영 중 “실습기관”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,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내용을 “대학”에 통보하고 “대학” 및 “학생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“대학”에 통보하고 “대학”과의 협의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“대학” 및 “학생”에게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 가. 무단결석 등 “학생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- 나. 제 4조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

**제13조(기타)**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.

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 
“실습기관”, “학생”, “대학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실습기관 • 회사명 :

실습기관 • 대표자 :

(인)

학    생 • 첨부자료 대체

대    학 •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취창업처

대    학 • 처    장 : 최 영 근

(인)